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94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김소희 · 이현승 · 서일준
강승규 · 김은혜 · 조경태
김기웅 · 박덕흠 · 유용원
최수진 · 서천호 · 박충권
윤상현 · 박수민 · 김기현
김종양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용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여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서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SM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SMR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와 함께 집중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

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 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소형 모듈원자로”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중 “반도체 분야”를 각각 “반도체·소형모듈 원자로 분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u>분야</u>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p> <p>4) (생략) 나. (생략) 3. (생략) ② ~ ⑤ (생략)</p>	<p>---<u>반도체·소형모듈원자로 분야</u>----- ----- ----- ----- --</p> <p>4)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	---